

연료사용규제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용유류의 황함유 기준 및 공급지역·사용시설의 범위와 연료의 제조·사용 등의 규제에 관한 연료사용규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4. 4. 6

환경처 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 및 공급지역·사용시설의 범위와 연료의 제조·사용등의 규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료”라 함은 열의 공급·이용등을 목적으로 연소시키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2. “연료용 유류”라 함은 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중 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중유(B-A유, B-B유, B-C유), 경유, 저황왁스유(LSWR)와 기타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유류를 말한다.
3. “저황유”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말한다.
4. “황함유량”이라 함은 연료용 유류중에 포함된 황분의 중량 백분율을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

단·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7. “아파트”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연립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9. “전용면적”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상의 “표시란(건물의 전유부분 표시)”의 면적을 말한다.
10. “보일러”라 함은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증기나 온수를 얻어 목적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청정연료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청정연료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청정연료 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2. “석유정제업자”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① 이 고시는 전기·태양열 또는 풍력등 대기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난방용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이 고시는 해상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이 고시중 제5조의 규정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석유비축물량을 방출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장 저황유 의 사용

제4조(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저황유의 공급 및 사용지역)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기준에 적합한 저황유의 공급·사용지역 및 사용자는 <별표-2>와 같다.
- ② 연료용 유류 사용자는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황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및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저황유 이외의 연료용 유류를 공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유 사용면제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한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부산직할시 및 전라남도 여천시, 경상남도 울산시 지역내의 화력발전소중 <별표-3>에서 정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그 정한 조건에 따라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저황유의 사용면제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유 이외의 연료용 유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저황유사용면제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저황유사용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요약설명서
- 2. 공정별 배출시설에 대한 설명서
- 3. 대체연료의 사용량 및 성분분석서
- 4. 저황유와 대체연료의 사용시 오염물질배출량 비교표

제7조(황함유량 분석방법) 연료용 유류중의 황함유량 분석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제8조(시험분석기관) 연료용 유류중의 황함유량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국립환경연구원 및 지방환경관서
- 2.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3. 한국석유품질검사소
- 4. 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

제 3 장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제9조(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체연료의 사용이 금지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인천직할시, 대구직할시, 광주직할시 및 대전직할시
- 2. 경기도의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미금시 및 남양주군
- 3. 경상남도의 울산시 및 울산군

제10조(고체연료의 사용승인)

- 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업자는 사용승인을 받아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

다.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 지역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석탄연료를 제외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고체연료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에서 정하는 고체연료 사용시설설치승인 기준에 적합한 설치계획서
2. 굴뚝의 형태, 높이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설치계획서
3. 굴뚝자동측정기 및 굴뚝감시모니터의 설치계획서

제 4 장 청정연료의 사용

제11조(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대상시설의 범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지역내의 업무용(영업용 및 공공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일러,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및 발전시설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직할시, 경기도의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고양시(이하 "수도권지역"이라 한다)
3.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다만,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제12조(업무용 보일러의 연료사용)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 사용의무 지역내의 업무용 보일러는 그 시설용량의 합계가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되 그 사용연료 및 시행시기는 <별표-5>와 같다.

제13조(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사용)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 사용의무지역내의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동일한 보일러시설(여러단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열을 공급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열을 공급받는 단지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전용면적이 12.1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그 사용연료 및 시행시기는 <별표-6>과 같다.

제14조(청정연료사용의무지역내의 발전시설의 연료사용)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 사용의무지역내의 발전시설중 경인화력발전소는 '97. 8. 31일까지 저황황스유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순간적으로 전력 수요의 증가 또는 도시가스용 수요급증 등의 사유로 청정연료만으로는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순간에너지 사용량의 15% 이내에서 경유 또는 저황황스유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가 청정연료이외의 연료를 16% 이상 사용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환경처장관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조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서울시 및 수도권지역내의 업무용 열병합발전시설중 1992. 10. 1일 이전에 설치한 업무용 열병합발전 시설로서 그 구조가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주로 내연기관식인 경우를 말한다)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받은 연료와 청정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청정연료 배관망 설치계획 제출)

도시가스 사업자는 당해년도의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대상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계획서를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설치 완료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난방열 사용)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이하 "지역난방"이라 한다) 공급계획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에 지역난방 공급사업주체("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폐기물 소각장의 폐열 등으로써 지역난방공급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한 시설중 제12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의한 청정연료사용 대상시설은 청정연료 또는 지역난방을 선택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난방 열공급시까지 경유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난방공급사업자는 당해년도 지역난방 대상시설에 대한 청정연료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지역난방공급관이 설치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설치 완료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연료용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조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연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각 대상시설의 사용의무화 시행시기 이후부터는 연료용유류를 공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공급계획시설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 또는 연료전환을 위한 시설대체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경유를 공급·판매할 수 있다.

제18조(겸용버너에 대한 봉인조치)

①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시설에 청정연료와 연료용 유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겸용버너를 설치한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연료용 유류의 공급관에 대한 봉인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을 받은 경우 청정연료의 공급중단사태등으로 연료용 유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경유를 사용하되 사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봉인해제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다시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되지 아니한 청정연료공급 중단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봉인을 제거한 후 사용하되 즉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본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정연료공급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고시의 시행일 또는 제12호 내지 제14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청정연료 공급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관이 설치 완료되어 청정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청정연료사용에 관한 이 고시 규정의 적용을 유보하되, 적용일 이후부터는 경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환경처고시 제92-40호('92.6.25)에 의한 금지·승인등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

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고시폐지) 환경처고시 제92-40호('92.6.25)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1>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제4조 관련)

연료용 유류	황함유기준
중유(B-A, B-B, B-C유)	1.6%이하, 1.0%이하
경유	0.2%이하
저황왁스유(LSWR)	0.3%이하

<별표-2>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제5조 제1항 관련)

대상연료	황함유율	대상지역		시행시기	
		시·도·명	시·군·명		
경유	0.2%이하	서울	전지역	1993.7.1일부터	
		부산	전지역		
		대구	전지역		
		인천	전지역		
		광주	전지역		
		대전	전지역		
		경기도	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안양·의왕·의정부·안산·군포·시흥·구리·미금·하남·고양시, 남양주·광주·김포군		
		강원도	춘천·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제천시		
		전라남도	여천시, 여천군		
		경상북도	포항·구미시		
		경상남도	울산·김해·창원시, 울산·김해·양산군		
		중유	1.6%이하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주·군산시				
1.0%이하	서울		전지역	1993.7.1일부터	
	인천		전지역		
	경기도		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안양·의왕·의정부·안산·군포·시흥·구리·미금·하남·고양시, 남양주·광주·김포군		
	부산		전지역		1994.7.1일부터
	대구		전지역		1995.7.1일부터
	경상남도		울산시(영남화력발전소에 한함)		1995.1.1일부터
	광주		전지역		1996.7.1일부터

대 전	전 지 역
강 원 도	춘천 ·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 · 제천시
전라남도	여천시, 여천군
경상북도	포항 · 구미시
경상남도	울산시, 울산군, 김해시, 김해군, 창원시, 양산군

※ 상기 전지역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황합유율 1.0% 이하의 증유사용 전까지는 황합유율 1.6% 이하의 증유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3> 화력발전소의 연료사용 조건 (제5조 제4항 관련)

발전소명	소재지	연 료 사 용 조 건	
		연 료 사 용	예 외 조 건
부산화력 (1·2호기)	부 산	황합유량 1.6% 이하의 액체연료('94.6.30일까지)	전체 황합유량이 2.5%(B-C유 중량기준)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1.6% B-C유와 석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황합유량 1.0% 이하의 액체연료('94.7.1일부터)	전체 황합유량이 2.0%(B-C유 중량기준)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1.0% B-C유와 석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호남화력	여 천	황합유량 1.6% 이하의 액체연료	전체 황합유량이 1.6%(B-C유 중량기준)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1.6% B-C유와 석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남화력	울 산	황합유량 1.0% 이하의 액체연료	연료수급상의 문제로 황합유량 1.0% B-C유만으로는 전력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황합유량 1.6% B-C유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4>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 승인기준 (제10조 제2항 관련)

구	분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
배출시설 굴뚝높이 비산먼지 방지시설	가. 석탄사용시설 나.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사용시설은 100m 이상 · 기타시설은 20m 이상
	가. 석탄사용시설 - 수 송 - 저 장 - 연소재처리 나.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 수 송 - 저 장 - 연소재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수송은 밀폐콘베어벨트 또는 밀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 석탄저장은 옥내저장시설(사이로 포함) 또는 지하저장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 연소재는 밀폐통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 수송은 유개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저장은 옥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 연소재 운반은 유개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오염물질 측정기부착	가. 석탄사용시설 나.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사용시설은 SO₂, NO_x, 먼지, O₂ 의 굴뚝자동오염물질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시설은 매연 모니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5>

업무용 시설의 연료사용(제12조 관련)

대상지역	보일러 용량의 합	시 용 연 료	시행시기
서울	○ 2톤 이상	청정연료	1988. 9. 1
	○ 2톤 미만 1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1990. 9. 1
	○ 1톤 미만 0.5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1991. 9. 1
	○ 0.5톤 미만 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1994. 9. 1
수도권	○ 2톤 이상	청정연료	1991. 9. 1
	○ 2톤 미만 0.5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1992. 9. 1
	○ 0.5톤 미만 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1995. 9. 1
부산·대구	○ 0.5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1993. 9. 1
	○ 0.5톤 미만 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1996. 9. 1

<별표-6>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사용(제13조 관련)

대상지역	구 분	평 균 전 용 면 적	시 용 연 료	시 행 시 기
서울	기 존	· 35평 이상	청정연료	1990. 9. 1
		· 35평 미만 30평 이상	청정연료	1991. 9. 1
		· 35평 미만 25평 이상	청정연료	1992. 9. 1
		· 25평 미만 21평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1995. 9. 1
		· 21평 미만 18평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1996. 9. 1
		· 18평 미만 12.1평 초과	청정연료 또는 경유	1997. 9. 1
	신 규	· 25평 이상(아파트는 '90.1.24일, 연립주택은 '91.4.1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완공시점
		· 25평 미만 14평 이상(아파트는 '90.1.24일, 연립주택은 '91.4.1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완공시점
		· 14평 미만 12.1평 초과('94.5.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완공시점
수도권	기 존	· 35평 이상	청정연료	1991. 9. 1
		· 35평 미만 30평 이상	청정연료	1992. 9. 1
		· 30평 미만 25평 이상	청정연료	1993. 9. 1
		· 25평 미만 21평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1996. 9. 1
		· 21평 미만 18평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1997. 9. 1
	신 규	· 25평 이상(아파트는 '91.1.1일, 연립주택은 '91.4.1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완공시점
		· 25평 미만 14평 이상(아파트는 '91.1.1일 이후, 연립주택은 '91.4.1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완공시점
		· 14평 미만 12.1평 초과('94.5.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완공시점
부산, 대구	기 존	· 25평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1996. 9. 1
		· 25평 미만 18평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1997. 9. 1
	신 규	· 12.1평 초과('94.5.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완공시점